

## 「평창군 희망택시 운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
# 검 토 보 고 서

본 조례안은 2021년 05월 03일 장문혁 의원이 발의하고, 2021년 05월 1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 상정된 안건 임.

### 1. 제안이유

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,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교통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강원도 희망택시 운영계획을 기초로 한 자체 계획 수립 의무 (안 제3조)
- 나. 희망택시 이용 대상자(안 제4조)
- 다. 희망택시 운행방법 및 이용방법(안 제5조, 6조)
- 라. 지원결정 및 비용지급(안 제7조)
- 마.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의 지원금 지급 중단 등(안 제9조)

### 3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

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

- 본칙 9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주요내용으로는
  - 안 제3조에서는 강원도 희망택시 운영계획을 기초로 한 자체 계획수립의무
  - 안 제4조에서는 희망택시 이용 대상자
  - 안 제5조, 제6조에서는 희망택시 운행방법 및 이용방법
  - 안 제7조에서는 지원결정 및 비용지급
  - 안 제9조에서는 이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와 부정한 방법의 신청으로 인한 지원금 지급 중단 등에 대해 각각 규정하였습니다.

#### ○ 우리군 희망택시 사업은

2014년 7월 처음 시범 실시되어 현재까지 시행되어 온 사업입니다.

2021년 희망택시 지원사업 예산액은 5억원으로서

재원은 국비 17% 도비 25% 군비 58%로 구성되어 있으며,

2014년 진부면 간평2리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53개 마을로 확대 시행되는 등 사업은 크게 활성화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.

#### ○ 각 지자체들은 “희망택시, 행복택시, 마중택시, 수용응답택시 등”

다양한 명칭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, 전국적 조례시행 지자체는 65곳이고 강원도 시·군은 9곳으로 확인됩니다.

(정선, 강릉, 동해, 속초, 양구, 인제, 홍천, 화천, 횡성)

○ 해당 사업은 복지증진을 위한 자치사무로서

“정책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, 주민에 대한 급부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” 자치법규 마련이 필요하며, 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」상 편성목에 따른 조례위임사항이기도 합니다.

○ 본 조례안은

「지방자치법」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

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시행의 자치사무를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제정에 따른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.

#### 4. 참고자료 : 관계법령

「지방자치법」, 「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」, 「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」